미성년 상속인 특별대리인 선임 준비자료 안내

유형: 준비서류 안내문 / 사건별 확인용

먼저 가족관계와 신청 목적을 확인합니다

- 피상속인, 모든 상속인, 미성년 자녀별 친권자·후견인을 확인합니다. 부모가 공동상속인인지, 자녀가 여럿인지, 상속포기 신고가 실제로 수리됐는지를 구별합니다.
-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부모와 자녀 또는 같은 친권에 따르는 자녀들 사이에 이해상반이 있는지 검토합니다. 부모의 선의나 최종 취득액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.
- 어느 미성년 자녀의 어떤 협의행위를 위해 선임이 필요한지, 자녀별로 별도 대리인이 필요한지 구분합니다. 가족이 후보를 정했다고 선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

분할안과 재산자료

- 부동산·예금·주식 등 재산과 확인된 채무를 목록으로 만들고,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와 표시를 대조합니다.
- 각 상속인이 받을 재산·지분·정산금과 지급방법을 구체적인 협의분할안에 적습니다. 채무의 내부 분담이 채권자에게도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.
- 재산가액 자료와 각 자녀에게 미칠 경제적 효과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. 평가 방법과 기준일은 해당 재산과 절차에 맞춰 확인합니다.

통상 확인하는 신분·후보 자료

-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: 신청인과 미성년 사건본인, 친권자·후견인의 관계, 선임을 구하는 자녀, 대리인이 수행할 구체적 협의행위,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신청 이유를 각각 적습니다. 자녀별로 별도 선임이 필요한지는 이해상반 구조에 따라 확인합니다.
-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초안: 어느 자녀가 어떤 재산·지분을 취득하고 정산금을 어떻게 받을지 대리행위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. 초안만으로 협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.
- 사망과 상속관계: 기본·가족관계·혼인·제적 등 사건에 필요한 증명서.
- 자녀별 주소와 친권·후견관계: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관련 자료.
- 특별대리인 후보자의 인적사항, 자녀와의 관계 및 이해관계 유무를 설명할 자료.
- 이미 작성한 협의서, 상속포기 수리 심판서, 선행 특별대리인 심판서가 있다면 그 사본.

신청 후 이어질 단계

특별대리인 선임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분할협의나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습니다. 심판에서 허용한 행위의 범위와 실제 협의서 내용을 맞추고, 특별대리인이 해당 자녀를 위해 협의에 참여한 뒤 등기·금융기관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따로 확인합니다. 친권자와 여러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서 협의분할하는 경우에는 각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.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아니거나 대리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이해상반관계를 별도로 판단합니다. 실제 첨부목록·관할·후보 적합성은 관할 가정법원의 최신 안내와 보정명령에 따릅니다.

공식 근거: 민법 제921조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민법/제921조 ;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5호 https://www.law.go.kr/lsLinkCommonInfo.do?lsJoLnkSeq=1026995895 ; 대법원 1993.4.13. 선고 92다54524 https://www.law.go.kr/LSW/precInfoP.do?precSeq=200903

자료 확인: 2026-10-03. 이 안내는 보편적인 제출서류 확정목록이 아닙니다.